

의안번호	2206506
의 퇴 인	임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계번호	24A5986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(제13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“지하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”이며, 지원 내용은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”를 말함
- 참고로, 현재 「전기안전법」 제11조 및 제12조¹⁾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

1)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1조(정기검사)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「전기사업법」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(이하 “기술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그 소유자

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414,68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중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은 대략 50.5% 수준임

[표 1]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(2024년말 기준)

(단위: 기, %)

운영주체	전기차 충전시설 전체			
		지상	지하	확인중
국가(환경부, A)	8,353	8,072	281	—
지방자치단체(B)	1,078	358	86	634
민간 등 기타(C)	405,255	162,709	210,945	31,601
국가 및 지자체 소계(A+B)	9,431	8,430	367	634
합 계(A+B+C)	414,686	171,139	209,508	32,235
(비중)	(100.0)	(41.3)	(50.5)	(7.8)

자료: 환경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